



#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

#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

##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시적으로 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되,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



###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



## 덤프트럭



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으로 기동성이 좋아 원거리 화물(토사, 모래, 자갈 등) 운반에 적합한 적재 용량 12톤 이상인 차량계 건설기계

###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

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. 다만,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.



## 덤프트럭 종류 및 작업 특성

적재함의 경사방향에 따라 리어, 버텀, 사이드, 3방향 열림 덤프트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국내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덤프트럭은 적재물을 뒤쪽으로 내리는 리어 형식이다.



리어 덤프트럭



사이드 덤프트럭



버텀 덤프트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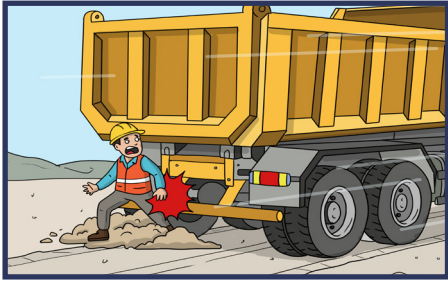
## 재해발생 유형 - 주요 위험요인



- 덤프트럭이 후진 중 경보장치 미작동으로 후방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와 부딪힘
-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등을 미체결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이 뒤집힘
- 덤프트럭 하부 및 적재함 점검 시 적재함 하강에 의한 근로자 끼임



## 재해사례



### 골재 하역을 위해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힘

도로 건설현장에서 골재 하역을 위해 후진하던 중 작업 중인 재해자와 부딪힘

#### 원인

차량 통행로에 대한 출입금지조치 미실시

#### 대책

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펜스,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 통제



## 덤프트럭 작업 시 주의사항



1

경사면 등 주·정차 시  
브레이크 체결



2

후방카메라 작동  
상태 확인



3

정비작업 시  
안전블록 설치



4

타이어 손상 및  
마모상태 확인



## 필수 안전보건교육



### 노무제공 시 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)

- 대상** •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,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
- 방법** • 작업 배치 전,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
※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
- 시간** •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\* 또는 간헐적 작업\*\*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)  
\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\*\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• **교육시간 1/2 면제**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 
• **전체면제**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
- 내용** •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
•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
•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
•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 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

### 특별안전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)

- 대상** •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 
•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 
•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
- 방법** • 작업 배치 전
- 시간** •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,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  
•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\* 또는 간헐적 작업\*\*인 경우)  
\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\*\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• **교육시간 1/2 면제**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
• **전체면제**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- 내용** • 공통사항 및 각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  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## ※ 건설기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

- 산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~ 제40조, 제86조, 제89조, 제91조 ~ 제93조, 제98조, 제99조, 제196조 ~ 제206조
- 공단 기술지원규정(KOSHA GUIDE) C-48-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, C-39-2023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, C-114-2020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지침